

# 심사보고서

## 【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】

의안번호  
697

2022. 3. 22.  
산업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: 2022. 3. 10.(남양주시장)
- 나. 회부일자 : 2022. 3. 11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. 3. 22.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# 가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 종합지침에 맞게 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고, 관련법 조례 위임사항과 개정사항 반영 등 법적·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법률 합치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변경
  - (현행) 「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」
  - (개정) 「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」
- 조례 조문 지역화폐 명칭 변경
  - (현행) 남양주지역화폐, 지역화폐
  - (개정) 남양주사랑상품권
- 조례 위임사항 반영(안 제5조 및 제8조)
  - 남양주사랑상품권 할인 비율 규정 신설(안 제5조 제4항)
  - 남양주사랑상품권 잔액 환급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 제1항~제2항)

- 소상공인 범위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9조 제1항)
- 위촉직 위원 구성 기준 구체화(안 제15조 제3항)
- 다른 조례 조문, 별표에서 본 조례 인용한 “조례 제명” 및 “지역 화폐 명칭” 변경
  - 「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」(안 제2조 및 제3조)
  - 「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」(안 제2조 및 제5조)
  - 「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」(안 제3조)
  - 「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」(안 별표 2)
  - 「남양주시 주차장 조례」(안 별표 2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명구)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종합지침에 맞게 지역화폐를 남양주 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고자 관련법 조례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먼저 조례 제명 및 조문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안 제5조 남양주사랑상품권 할인 비율 규정 신설과 안 제8조 남양주사랑상품권 잔액 환급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은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며, 안 제9조는 소상공인 범위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, 안 제15조는 위촉직 위원 구성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,
- 아울러 다른 조례 조문, 별표에서 본 조례 인용한 조례 제명 및 지역 화폐 명칭 변경 등을 전부개정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부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질의·답변요지 :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